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2236 |
|------|------|

제출일자 : 2022.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이 2022. 4. 26.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권에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제2조 및 제8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상위법에 기규정된 연령 내용 삭제(안 제3조)
- 다. 주민투표 대상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 인서명부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마. 구청장이 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 규정(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복 내용 삭제(안 제13조)

사. 그 밖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2. 9. 6 ~ 2022. 9. 26) 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은 주민 투표권”을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 및 주소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진의 제5항) 중 “하며”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한다.

1. 금천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금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중 작성요령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작성요령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앞장 하단 작성요령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뒷장 작성요령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한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란에는 통·반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각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 | |
|---|---------------|-----------|------|
| 청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 |
| 청구 이유 | | | |
| 주민투표 | []신청 []필요없음 | | |
| 실시구역 변경 | 〈변경 사유〉 | | |
|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p> | | | |
|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 | |

| 현 | 행 |
|---|--|
|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 |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은 주민 투표권이 있다.</u>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 투표권이 있다.</u>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
| | · 분합에 관한 사항 |
| | 2.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소 |

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및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
무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천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금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
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
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
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
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
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
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11.9.>

⑤ · ⑥ (생 략)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
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
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
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8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 | |
|---|----|------|-----------|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 주소 | | |
|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 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1. 증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 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 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 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 |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
|------------|---|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민투표 | |
| 청구요지 | |
| 서명요청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제외지역 : | |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p> | |
|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

【별지 제3호서식】

| | |
|---|--|
| 제외지역 : | |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p> | |
|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참 제>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
|--|----|-----------------|
| 주민투표 | | |
| 청구요지 | |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p> | | |
| <p>(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p> | | |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수입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급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급천구청장(인)</p> | |
|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p> <p>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울특별시 급천구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수입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급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급천구청장(인)</p> | |
|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울특별시 급천구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절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또는 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 |
|--|---|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 청구 이유 | |
|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 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 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삭 제>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 | |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 상 | | | |
| 신 청 취 지 | | | |
| 신 청 사 유 | | | |
|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증명자료 | | | |
| ※ 작성요령 | | | |

| 이의신청서 | | |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 상 | | | |
| 신 청 취 지 | | | |
| 신 청 사 유 | | | |
|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증명자료 | | | |
| ※ 작성요령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
|--------|
| 작성자 이름 |
| 연 락 처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4.06><개정 2018.11.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 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4.06, 2018.11.9.>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9.>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018.11.9.>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9.>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개정 2018.11.9.>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개정 2018.11.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8.11.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8.11.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

년월일, 주소(국내거소신과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6., 2016.3.11., 2018.11.9.>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4.06., 2016.3.11., 2018.11.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및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06, 2018.11.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8.11.9.>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제11조(서명의 유·무효확인 기준일)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9.>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9.>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11.9.>
-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5>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1.9.>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11.9.>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개정 2018.11.9.>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1.9.>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1.9.>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9.>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11.9><개정 2018.11.9.>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 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11.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1.9.>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11.9.>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처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4조제3항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09. 2. 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시행일: 2022. 10. 27.] 제7조제1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하 나머지 서명
-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2조의2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